

기관명

수신자

제목 **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**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				
지급 대상자	등록번호		성명	
	생년월일(성별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전직지원금지 급내역	지급액	원	지급기간	~ (회)
지급중단 내용	사전통지일			
	중단사유			
	중단일			
※ 유의사항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서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, 전직지원금을 다시 지급받으려면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3에 따라 전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				
[이의신청 안내]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

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 팩스 ()

/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